

## 1. 개정이유

「의료법」(법률 제15540호, 2018.3.27. 개정, 2020.3.28. 시행) 제78조 개정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는 전문성을 가진 관계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반면, 업무 위탁의 근거가 부재하여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질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보완 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정신보건시설 등의 명칭이 변경 됨에 따라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산업의학과가 직업환경의학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공식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법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 제4항)

다.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인정기관 및 실습협약기관 관련 타법 개정사항, 공식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함(별표1 및 별표2)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업무 범위)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보건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보건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보건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보건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지역사회 질병 예방 및 보건교육, 건강 증진, 그 밖의 보건전문  
간호에 필요한 업무

### 2. 마취

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마취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마취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마취 준비, 마취 후 회복 관리, 그 밖의 마취전문간호에 필요한

### 업무

### 3. 정신

가. 의사, 한의사의 지도,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질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정신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정신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간호 및 환자·가족·지역사회 등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그 밖의 정신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 4. 가정

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가정간호

나. 가정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가정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그 밖의 가정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 5. 감염관리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감염관리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감염관리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감염관리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지도, 관리, 질 향상

라. 감염 예방, 감시, 관리 및 교육, 그 밖의 감염관리전문간호에 필  
요한 업무

### 6. 산업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산업보건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산업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산업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그 밖의 산업  
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 7. 응급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응급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응급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응급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시술 · 처치 · 관리,  
그 밖의 응급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 8. 노인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노인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노인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노인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노인에 대한 질환 관리 · 건강 증진에 필요한 활동, 그 밖의 노인  
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 9. 중환자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중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중환자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중환자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중환자 상태 변화의 감시, 중환자실 · 치료기기의 설정 조정, 그  
밖의 중환자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 10. 호스피스

가. 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호스피스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호스피스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호스피스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호스피스 전환기 환자 관리 및 임종 간호, 환자 가족을 위한 상담,  
그 밖의 호스피스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 11. 종양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종양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종양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종양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종양 환자의 증상 관리 및 암 생존자 관리, 그 밖의 종양전문  
간호에 필요한 업무

#### 12. 임상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상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임상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임상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질환·합병증 등 임상증상 수집, 임상 문제 판단 및 치료를 위한  
 간호, 그 밖의 임상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 13. 아동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아동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아동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아동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아동·가족의 건강력 수집, 아동의 건강문제 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진단 및 간호, 그 밖의 아동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제4조제1항 중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의료법」 제7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과정”로 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및 평가 등 질 관리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3조”를 “「의료법」 제78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의 정신분야 실무경력인정기관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  
 고, “정신보건시설 또는 정신보건센터” 부분을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정신건강증진센터”로 한다.

별표 2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신 전문간호사의 실습 협약 기관 제2호 중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센터”를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건강  
 증진센터”로 하고, 같은 표 산업 전문간호사의 실습 협약 기관 제1호 중  
 “산업의학과”를 “직업환경의학과”로 하며, 같은 표 중환자 전문간호사의  
 실습 협약 기관, 임상 전문간호사의 실습 협약 기관 및 아동 전문간호사  
 의 실습 협약 기관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을 각각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등에서 종전의  
 제3조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78조제2항의 규  
 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1]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제4조의제2항 관련)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12.3.19>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제4조제2항 관련)

1. 자격구분별 실무경력인정기관

| 전문간호사<br>자격구분 | 실무경력인정기관                                                                                                                                                                                                      |
|---------------|---------------------------------------------------------------------------------------------------------------------------------------------------------------------------------------------------------------|
| 가. 보건         | ○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br>○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보건위생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나. 마취         | ○ 의료기관의 마취통증의학과, 회복실, 당일수술센터 및 통증클리닉                                                                                                                                                                          |
| 다. 정신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정신건강증진센터<br>○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정신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라. 가정         | ○ 의료기관<br>○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br>○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 마. 감염 관리      | ○ 의료기관에 설치된 감염관리실<br>○ 종합병원                                                                                                                                                                                   |
| 바. 산업         | ○ 사업장 의무실·건강관리실 또는 부속의료기관<br>○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의료관리원<br>○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산업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노동연구원, 노동건강연구소, 한국산업간호협회, 근로복지공단(산업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                                                                                                                         |
|---------|-------------------------------------------------------------------------------------------------------------------------|
| 사. 응급   | ○ 응급의료기관<br>○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급·구조대<br>○ 종합병원<br>○ 군병원(간호장교의 경우만 해당된다)                                                     |
| 아. 노인   | ○ 의료기관<br>○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br>○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br>○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 자. 중환자  | ○ 종합병원(중환자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 300병상 이상의 군병원(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장교의 경우만 해당된다)                                          |
| 차. 호스피스 | ○ 의료기관(호스피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 종합병원<br>○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 카. 중앙   | ○ 종합병원<br>○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암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타. 임상   | ○ 종합병원(심장·호흡기계, 소화기계, 신경·근골격계, 비뇨·생식계 및 내분비계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파. 아동   | ○ 종합병원<br>○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br>○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br>○ 「학교보건법」에 따른 보건시설<br>○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2. 경력인정기간 특례

위 표에서 “마. 감염관리” 및 “사. 응급” 분야의 종합병원, 군병원에서의 경력은 그 75%만 해당 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별표2]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제5조제1항 관련)

| 자격구분          | 교수요원             |                 | 실습 협약 기관<br>(※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               | 전공전임 교수          | 실습지도 겸직교수       |                                                                                |
| 보건<br>전문간호사   | 학생 10명당<br>1명 이상 | 학생 5명당<br>1명 이상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중 2개소 이상                                                      |
| 마취<br>전문간호사   | 학생 10명당<br>1명 이상 | 학생 5명당<br>1명 이상 | 마취과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
| 정신<br>전문간호사   | 학생 10명당<br>1명 이상 | 학생 5명당<br>1명 이상 | 1. 정신과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br>2. <b>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센터</b><br>중 1개소 이상       |
| 가정<br>전문간호사   | 학생 10명당<br>1명 이상 | 학생 5명당<br>1명 이상 | 1.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하는 「의료법」에 따른<br>종합병원<br>2.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보건소                    |
| 감염관리<br>전문간호사 | 학생 10명당<br>1명 이상 | 학생 5명당<br>1명 이상 | 감염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는 300병상 이상의<br>종합병원                                               |
| 산업<br>전문간호사   | 학생 10명당<br>1명 이상 | 학생 5명당<br>1명 이상 | 1. <b>직업환경의학과</b>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기관<br>2. 의사 또는 간호사가 전담보건관리자로 지정된<br>사업장           |
| 응급<br>전문간호사   | 학생 10명당<br>1명 이상 | 학생 5명당<br>1명 이상 | 응급의학과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
| 노인<br>전문간호사   | 학생 10명당<br>1명 이상 | 학생 5명당<br>1명 이상 | 1.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br>재가노인복지시설 중 1개소 이상<br>2.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
| 중환자<br>전문간호사  | 학생 10명당<br>1명 이상 | 학생 5명당<br>1명 이상 | <b>상급종합병원</b>                                                                  |
| 호스피스<br>전문간호사 | 학생 10명당<br>1명 이상 | 학생 5명당<br>1명 이상 | 1. 호스피스 병동(산재형 병실을 포함한다)을 운영<br>하고 있는 병원<br>2. 가정 호스피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
| 종양<br>전문간호사   | 학생 10명당<br>1명 이상 | 학생 5명당<br>1명 이상 |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                                                              |
| 임상<br>전문간호사   | 학생 10명당<br>1명 이상 | 학생 5명당<br>1명 이상 | <b>상급종합병원</b>                                                                  |
| 아동<br>전문간호사   | 학생 10명당<br>1명 이상 | 학생 5명당<br>1명 이상 | <b>상급종합병원</b>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3조(자격인정 요건) 전문간호사<br>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br>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br>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br>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br>(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br>합격하여야 한다.<br>1. 제4조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br>육과정을 마친 자<br>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br>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br>자격이 있는 자 | 제3조(업무 범위) 전문간호사의<br>분야별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br>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br>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br>그러하지 아니한다.<br>1. 보건<br>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br>지도, 지도에 따른 처방 하<br>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br>그 밖에 이에 준하는 보건<br>진료에 필요한 업무<br>나. 보건전문간호 제공을 위<br>한 협력과 조정<br>다. 보건전문간호 분야의 교<br>육, 상담, 관리, 질 향상<br>라. 지역사회 질병 예방 및 보<br>건교육, 건강 증진, 그 밖<br>의 보건전문간호에 필요한<br>업무<br>2. 마취<br>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하<br>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br>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br>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

나. 마취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마취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마취 준비, 마취 후 회복 관리, 그 밖의 마취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 3. 정신

가. 의사, 한의사의 지도,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질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정신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정신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간호 및 환자·가족·지역사회 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그 밖의 정신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 4. 가정

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가정간호

나. 가정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가정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그 밖의 가정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 5. 감염관리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감염관리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감염관리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감염관리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지도, 관리, 질 향상

라. 감염 예방, 감시, 관리 및 교육, 그 밖의 감염관리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 6. 산업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산업보건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산업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산업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  
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그 밖의 산업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 7. 응급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  
는 응급환자 진료에 필요  
한 업무

나. 응급전문간호 제공을 위  
한 협력과 조정

다. 응급전문간호 분야의 교  
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응  
급환자에 대한 응급기술  
· 처치 · 관리, 그 밖의 응  
급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 8. 노인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지도에 따른 처방 하  
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노인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노인전문간호 제공을 위  
한 협력과 조정

다. 노인전문간호 분야의 교

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노인에 대한 질환 관리 ·  
건강 증진에 필요한 활동,  
그 밖의 노인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 9. 중환자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  
는 중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중환자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중환자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중환자 상태 변화의 감시,  
중환자실 · 치료기기의 설  
정 조정, 그 밖의 중환자전  
문 간호에 필요한 업무

#### 10. 호스피스

가. 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호스피  
스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호스피스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호스피스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호스피스 전환기 환자 관  
리 및 임종 간호, 환자 가  
족을 위한 상담, 그 밖의  
호스피스전문 간호에 필요  
한 업무

#### 11. 종양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  
는 종양환자 진료에 필요  
한 업무

나. 종양전문간호 제공을 위  
한 협력과 조정

다. 종양전문간호 분야의 교  
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종양 환자의 증상 관리 및  
암 생존자 관리, 그 밖의  
종양전문 간호에 필요한  
업무

#### 12. 임상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  
는 임상 진료에 필요한 업  
무

나. 임상전문간호 제공을 위

한 협력과 조정

다. 임상전문간호 분야의 교

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질환·합병증 등 임상증

상 수집, 임상 문제 판단

및 치료를 위한 간호, 그

밖의 임상전문간호에 필요

한 업무

#### 13. 아동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  
는 아동 환자 진료에 필요  
한 업무

나. 아동전문간호 제공을 위  
한 협력과 조정

다. 아동전문간호 분야의 교  
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아동·가족의 건강력 수  
집, 아동의 건강문제 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진단  
및 간호, 그 밖의 아동전문  
간호에 필요한 업무

제4조(전문간호사 교육과정) ①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보건복  
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간호  
사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그 교

제4조(전문간호사 교육과정) ①  
「의료법」 제7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  
 -----

|                                                                                                                                                                                                                                                                                                                                                      |                                                                                                                                                                                                                                                                                                       |
|------------------------------------------------------------------------------------------------------------------------------------------------------------------------------------------------------------------------------------------------------------------------------------------------------------------------------------------------------|-------------------------------------------------------------------------------------------------------------------------------------------------------------------------------------------------------------------------------------------------------------------------------------------------------|
| <p>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p> <p>② (생 략)</p> <p>제5조(교육기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 ① ~ ③ (생 략)</p> <p><u>&lt;신 설&gt;</u></p> <p>제9조(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② ~ ⑤ (생 략)</p> <p>제1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교육기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p> <p><u>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및 평가 등 질 관리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u></p> <p>제9조(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① -----<br/>----- 「의료법」 제78조 제2항 -----.</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
|------------------------------------------------------------------------------------------------------------------------------------------------------------------------------------------------------------------------------------------------------------------------------------------------------------------------------------------------------|-------------------------------------------------------------------------------------------------------------------------------------------------------------------------------------------------------------------------------------------------------------------------------------------------------|